

제주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662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변 론 종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13.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E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6. 25. 피고 B에게 배당한 99,983,358원과 피고 C에게 배당한 33,327,787원의 각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피고 B은 16,180,080원 부분, 피고 C은 5,393,361원 부분을 각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E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6. 25. 피고 B에게 배당한 99,983,358원, 피고 C에게 배당한 33,327,787원의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5. 원고의 자녀 F 소유의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이하 ‘커피숍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들 소유의 부산시 사상구 I 내제조표 J K모텔 건물(부지까지 포함된다, 이하 ‘모텔건물’이라고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잔금] 없음, 2018. 10. 4.까지

[특약사항] 1) 모텔건물에 은행 대출금 24억 원, 전월세 6억 원 월 95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커피숍건물의 은행 대출금 30억 원, 전월세 5억 원 월 1,450만 원은 피고들이 승계한다.

모텔건물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19년 1월말까지 원고가 책임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한다.

계약 위반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들은 2019. 4. 30. 커피숍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9. 30.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4275호로 ① 모텔건물에 관하여 2018. 9. 15.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② 원고가 이전등기 및 대출금 승계, 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약사항에 따라 위약금 손해배상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 20. 피고들이 승소하였으며(무변론판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모텔건물의 임차인인 M은 2017. 2. 3. 모텔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9. 5.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20. 5. 29. 이를 낙찰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20. 6. 25.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경매채권자인 M과 'N조합의 승계인 O조합 자산관리회사'(E로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채권액을 각 100% 배당받고, 잉여금 133,311,145원이 그 당시 등기부상 100분의 25 지분권자인 피고 C에게 33,327,787원, 100분의 75 지분권자인 피고 B에게 99,983,358원 각 배당되었다.

마. 원고는 2020.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카단102093호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D 관련 잉여금으로 배당될 금액 중 피고 B에 대하여 112,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38,000,000원을 가압류하여 피고들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모텔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모텔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텔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잉여금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4275호 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0. 12.자 답변서가 2020. 10. 1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위 양 채권은 2020. 10. 16.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2020. 10. 16.까지 피고 B 83,803,278원(=7,500만 원 +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10. 16.까지 연 12%로 계산한 8,803,278원), 피고 C 27,934,426원(=2,500만 원 +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10. 16.까지 연 12%로 계산한 2,934,426원)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위 각 금액만큼은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16,180,080원(=99,983,358원-83,803,278원), 피고 C은

5,393,361원(=33,327,787원-27,934,42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4. 결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6. 25. 피고 B에게 배당한 99,983,358원과 피고 C에게 배당한 33,327,787원의 각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피고 B은 16,180,080원 부분, 피고 C은 5,393,361원 부분을 각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1)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기재하였다.